

국가유산청 고시 제 - 호

## 국가지정문화유산 공개 제한(해제) 고시

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궁·능의 공개를 제한합니다.

년 월 일

### 국 가 유 산 청 장

#### 1. 국가지정문화유산(궁·능) 공개 제한 내용

- 가. 근거 법령: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, 동법 시행규칙 제30조
- 나. 제한 대상: (세부내역 별첨)
- 다. 제한 기간: ~ ( 년간)
- 라. 제한 사유:

#### 2. 공개 제한 관련 규제 및 위반자 처벌

- 가. 문화유산 수리·관리 및 보호·보존을 위한 학술 조사 연구 등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(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제5항)
- 나. 공개 제한 지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(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01조 제8호)

#### 3. 연 락 처: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

- 주 소: (우)000-000
- 전화번호: (00)000-0000~00
- 홈페이지: <http://000.000.00>

붙임 국가지정문화유산(궁·능) 공개 제한 목록 1부. 끝.

국가지정문화유산(궁·능) 공개 제한 목록

